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KASOMIYA

등록번호 : 20214584

최초등록일 : 2021.11.10

최종등록일 : 2025.05.12

hera@ibowoo.co.kr

카소미야(KASO MIYA) 정 보 공 개 서

(주)보우엔파트너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5. . .

(주)보우엔파트너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72, 5층(잠실동)

전화 : (02)587-3000

팩 스 :

점포개발부 : (02)587-3000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보우엔 파트너스	카소미야 외 1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72, 5층(잠실동)			
	설립일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87.11.27	1988.04.10	1988.4.10	이진규	02-587-3000	
	법인등록번호	110111-0551724		사업자등록번호	213-81-4526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간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사용인 (대표)	이진규	카소미야 외 1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72, 5층(잠실동)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87. 11 ~ 현재		본인	02-587-3000	02-425-3363
사용인 (임원)	이지은	카소미야 외 1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72, 5층(잠실동)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0. 06. 28 ~ 현재		이진규	02-587-3000	02-425-3363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 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카소미야	
상 호	카소미야 OO점	
상표(서비스표)	KASOMIYA	

5.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	4,847,658	3,134,925	1,712,733	20,506,457	431,267	766,775
2023	2,670,435	1,241,538	1,428,897	19,399,716	195,916	48,055
2024	3,965,626	3,387,424	578,202	18,184,207	-620,720	-754,308

별도첨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당사는 가맹사업 이외의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총매출액과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동일합니다.(직영점 매출 포함되었고, 직영점만의 매출을 별도로 표시하기 곤란하여 합산하여 표시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이진규	대표이사	1987.11~현재	회장	경영 총괄
	이지은	전무	2010.06~현재	전무	기획 담당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2	·0	2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보우엔 파트너스	가맹사업 경영	2000.12.14.~현재	미소야(등록번호: 20080100430)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을 경영중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자	등록번호	소유자 (사용권자)	등록만료일
카소미야 (서비스표)	상권내 카소미야 상표 사용	2023.07.26	4020583090000	(주)보우엔파트 너스	2033.07.26

- ①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가맹본부는 동 지식재산권 소유자로부터 카소미야 가맹사업기간동안 그 사용을 부여받았습니다.)
- ②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23.11.16

2. 카소미야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보우엔 파트너스	카소미야	이진규	가맹사업 예정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72, 5층(잠실동)

3. 카소미야 업종

영업표지	업종	
카소미야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일식	프리미엄 돈카츠 전문점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0	1	2	1	1	4	1	3
서울	1	0	1	2	1	1	2	1	1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0	0	0	0	0	0	2	0	2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2	-	-	-	-	-	-
2023	0	1	0	0	0	1
2024	1	0	0	0	0	1

6. 카소미야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 12.31	2023. 12.31	2024. 12.31
가맹본부	(주)보우엔 파트너스	미소야	20080100430	외식업(일식)	198/1	189/1	180/1

7. 바로전 사업년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평균매출액(직영점매출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 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	해당없음	-	-	-	-	-	5곳미만
서울	1	해당없음	-	-	-	-	-	5곳미만
부산	0	-	-	-	-	-	-	
대구	0	-	-	-	-	-	-	
인천	0	-	-	-	-	-	-	
광주	0	-	-	-	-	-	-	
대전	0	-	-	-	-	-	-	
울산	0	-	-	-	-	-	-	
세종	0	-	-	-	-	-	-	
경기	0	-	-	-	-	-	-	
강원	0	-	-	-	-	-	-	
충북	0	-	-	-	-	-	-	
충남	0	-	-	-	-	-	-	
전북	0	-	-	-	-	-	-	
전남	0	-	-	-	-	-	-	
경북	0	-	-	-	-	-	-	
경남	0	-	-	-	-	-	-	
제주	0	-	-	-	-	-	-	

※ 1개 매장의 매출액 노출위험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8. [카소미야]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영업기간
2024	1	411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의 일반 정보

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2024년에 미소야 및 카소미야에 관련하여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 포함)로 51,046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2024년 손익계산서 기준).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주)신한은행	수신부 프랜차이즈팀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	02-3431-6161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보우앤파트너스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한은행을 통한 가맹금 예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따로이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을 체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카소미야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소요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게 될 비용은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가맹금	가맹본부	가맹금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보증금	가맹본부	가맹금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38,500				
최초가맹금	33,000	계약당일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개점전 교육비	5,500	계약당일	교육시작 1일전에 계약해지 시 반환		교육시작되면 반환불가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 귀하에게 반환됩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5,0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 정한 의무와 조치(간판철거, 로고제거 등)를 완료한 후에만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지급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합 계	43,500
최초가맹금	33,000
개점전 교육비	5,500
계약이행보증금	5,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비고
총계		156,860	5,229		*30평(99㎡) 기준 * 평당금액 제외: 초도물품대, 주방가스배관, 기타비용(점주직접구입)
의탁자	협력업체	8,580	286	설치 후 1일 이내	의자, 탁자(불박이석포함) 의탁자로 변경시 금액변동 (현장상황에 따라 별도 협의)
인테리어 (내부)	협력업체	104,500	3,484	계약시부터 설치 후 1일 이내	인테리어 자체시공시 설계 및 감리비 495만원 지급 (외부(파사드,테크),철거, 소방,닥트공사,전기승압, 냉난방기,가스배관,화장실 공사,자동문 등)별도
주방시설	협력업체	25,300	843	상동	가스배관 별도
간판 및 매장 사인물	협력업체	5,280	176	설치 후 1일 이내	외부 메인 사인 단면 기준 내/외부 간판,사인 포함,어닝포함 (점포 스펙에 따라 별도

					협의) 대형LED별도
주방집기, 비품	협력업체 및 협력업체	13,200	440	오픈 후 1일 이내	그릇, 접시, 수저, 컵, 쟁반 등 주방집기
기타비용	점주 직접구입				정수기, 소화기, 전화기 오디오 등

※ 주방가스배관공사

카소미야 가맹점포의 주방가스배관공사로 대략 LPG : 847~968천원/ LNG : 1,573~2,420천원의 공사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총계 계산은 LPG/LNG의 최대비용 적용/ 시공업체 : 지역가스배관시공업체)

※ 위 표의 금액은 99m²(30평)을 기준으로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495만원(VAT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착공 시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감리횟수 : 3회)

※ 서울/경기 지역 외 지방공사 시 지방경비가 별도 발생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점포개발팀 (전화:080-862-3300)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입점가능지역 안내 → 상권조사 및 입점 가능 지역 조사 (예비점주병행) → 예비점주 확인 점포 타당성 조사 및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점포선정 ※ 입지조사의 경우 당사와 예비점주가 함께 병행하고 예비점주가 확인 점포의 타당성을 통보 함.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카소미야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당사	월매출액x3.3%	익월 5일			
POS관리비	협력업체	별도 계약	별도계약			
리모델링 비용	해당업체	견적에 따라 다름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분담금	-	-	-	-	-	해당없음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4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 지급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카소미야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와 (주)보우앤파트너스의 계약내용, 즉 계약기간에 대한 잔여기간 내로만 승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양수인에게 고지 후 양수인이 동의했을 시에만 양수인이 부담할 가맹비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종료 후에 양수인은 (주)보우앤파트너스와 신규계약을 진행하고 가맹금 3,000만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 550만원과 계약이행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며 계약이행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상표, 상호의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 간판을 철거해야 합니다.
- 점포디자인, 내장 등의 특정 설계를 철거 또는 변경해야 합니다.
- 모형음식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카소미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과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구입강제품목 및 가격결정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을 참고바랍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카소미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로스카츠정식 외 (메뉴북 및 3)항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3회이상 위반 :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의 판매 제한

당사는 고객에 따라 판매상품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1. 로스카츠	13,500	홈페이지에 공지 또는 가격변동 시 별도 통보	2024.12 기준
2. 로스카츠정식	15,500		
3. 히레카츠	14,500		
4. 히레카츠정식	16,500		
5. 카소미야정식	14,000		
6. 로스&히레카츠	15,500		
7. 로스&히레카츠정식	17,500		
8. 통치즈카츠	14,500		
9. 통치즈카츠정식	16,500		
10. 모듬카츠	18,500		
11. 모듬카츠정식	20,500		
12. 옛날식로스카츠	14,500		
13. 옛날식로스카츠정식	16,500		
14. 매크로스카츠	14,500		
15. 매크로스카츠정식	16,500		
16. 키즈카츠	5,000		
17. 사누끼어묵우동	9,500		
18. 사누끼어묵우동정식	14,500		
19. 닭고기온소바	11,000		
20. 닭고기온소바정식	16,000		
21. 매크우동볶이카츠	14,000		
22. 로스카츠김치우동나베	13,000		
23. 바질마제소바	11,000		
24. 바질마제소바정식	16,000		
25. 냉소바	9,500		
26. 냉소바정식	14,500		
27. 자루소바	9,500		
28. 자루소바정식	14,5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프리미엄 돈가스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카소미야	해당 없음

동일한 업종이란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합니다.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반경 200M 이내 1개 점포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주상복합,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설정기준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카소미야’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카소미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국내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매출액비중(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35%	65%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카소미야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최초 신규 가입시 2년, 재계약시부터는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 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4)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5) [카소미야]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6)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	제28조 제3항

런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의 표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을에게 제28조 제3항 (1)~(6)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29조 제1항
○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영업의 지원이나 “물품” 수급을 거부하는 경우	
○ “을”이 “갑”의 사전 서면 동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营业을 3일 이상 연속으로 중단하거나 분기에 3일 이상 营业을 하지 않을 경우	
○ 소비자클레임(품질, 서비스, 기타, 점포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 소비자 클레임이 발생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이의 시정을 요구받았으나,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소비자 클레임에 대한 내용을 가맹본부의 담당자가 확인하고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3) 가맹점에서 지속적으로 컴플레인 또는 클레임이 발생하여 브랜드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타가맹점에 간접적 손해를 끼친 경우	
4) 기타 가맹본부의 소비자 클레임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동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营业을 3일 이상 연속으로 중단하거나 분기에 3일 이상 营业을 하지 않을 경우	제29조 제1항
○ 기타 가맹계약상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걸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29조 제2항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营业을 중단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거나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수정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게 되는 예상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 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운영팀 (02-587-3000)

귀하가 운영하는 카소미야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와 (주)보우엔파트너스의 계약내용, 즉 계약기간에 대한 잔여기간 내로만 승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양수인에게 고지 후 양수인이 동의했을 시에만 양수인이 부담할 가맹비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종료 후에 양수인은 (주)보우엔파트너스와 신규계약을 진행하고 가맹비 3,000만원(부가세별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 500만원(부가세별도)과 계약이행보증금 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비용이 발생 되지 않으며 계약이행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배우자간 명의 변경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운영팀 (02-587-3000)
상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승계)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동업자간 명의 변경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중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영업시간(11시~22시) 및 영업일수(월26일 이상)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친절도,	1회/4주	운영팀	
친절도(5항목)	품질관리 확인 → 관리표 작성 →			
품질 관리(7항목)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광고·판촉 활동

당사는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가맹점 모집광고, 상품광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전체 광고 및 판촉계획 공고(행사의 명칭/실시기간/분담비율/분담한도 등을 제시하며, 이러한 전국적인 광고나 판촉이 진행될 시

에는 가맹점 50%의 동의를 얻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경우 본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사전협의사항 : 광고지역 및 범위, 광고내용, 디자인 등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인 가맹본부 또는 그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가맹계약서 제36조)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해당페이지 참고	해당페이지 참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희망지역 확인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D-44~43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상권분석 - 가맹희망자와 병행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보증금 지불	- 보상보험증권 발부	D-29(1일)	IV.1참고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VIII 참고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 논쟁 또는 의견 차이는 “갑” 또는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소송으로 합니다. 단 “갑”과 “을”이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02-3445-9898,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정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정기적으로 점포 오픈시 인력지원 또는 판촉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 행사시 개별 가맹사업자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 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운영팀 (02-587-3000)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카소미야]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카소미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매장 운영 교육 음식가공	강의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교육, 매장, 제품관리에 대한 교육	방문지도 매뉴얼 배포	수시	필수 교육 (신메뉴)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카소미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신규 교육	10~25일 (매장 운영 시간)	5,5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1일	실비	신메뉴 출시 경우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본부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가맹계약서 23조에 따라 기한 내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카소미야 가로수길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75길 101-5 1층
2	경기	카소미야 동탄능동점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163
3	경기	카소미야 서판교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공원로3길 2 101호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년3.7개월	직영점 3개

3. 바로 전 사업연도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매출액산정기준

2024년 직영점의 연간평균매출액	비고(단위, 천원)
418,497천 원	포스 기준 (2024년도에 6개월이상 영업한 1개 매장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운영팀(02-587-300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ranchise.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misoya.c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구입강제품목(2025.04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및 결정기준(2025.04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권장품목 (거래상대방 : 당사 또는 자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2024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4년 대차대조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4년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3년 대차대조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3년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2년 대차대조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2년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